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관 호 의 원 대 표 발 의)

의 안 번 호	2026-65
------------	---------

발의연월일 2026. 9. 2.

발 의 자 이관호·안상미·양진석
이병학·김수경 의원(5인)

1. 제안이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과 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의 정의 및 처리절차를 정비하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도, 자체 우수제안 및 포상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제안의 제출 및 접수(안 제4조~제5조)
- 다. 제안의 심사 및 실시(안 제6조~제12조)
- 라. 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등(안 제13조~제15조)
- 마. 시상 및 보상 등(안 제16조~제20조)
- 바. 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 나. 입법예고: 2026. 9. 2.~2026. 9. 7.
- 다. 비용추계: 불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구민과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청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청장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 ④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6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심사기준

제7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의 보완·개선) 구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1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인천광역시 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평가

2.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상정 여부
3. 제12조에 따른 재심사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시상) ① 자체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2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8조(상여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일 제안으로 인하여 「공무원 제안 규정」, 「예산성과금 규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9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특전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2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